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5월 13일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부칙)
-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 정리(안 제5조)

라. 참고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대 회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지역 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지역 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